

NEWS & NEWS

News & News

치협, 대 회원 휴대폰 문자서비스 첫 실시 의료법 개정안 쟁점사항 재검토 요구 등 공지

치협이 회원들에게 휴대폰을 통한 첫 문자서비스(SMS·Short Message Service)를 실시했다.

지난 2월 6일 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해 “쟁점사항 재검토 요구와 개약조항 입법과정에서 저지한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긴급하게 공지했다.

치협은 앞으로도 휴대폰을 통해 회원들에게 긴급한 현안문제 등 공지할 내용을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를 활

성화 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치협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브레인컨설팅을 통해 실시되며, 현재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에 등록, 휴대폰 번호가 입력돼 있는 회원들에게 우선 발송된다.

이후에도 문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회원이나 기존 번호가 변경된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와 개인정보를 새로 변경하거나 치협 사무처(02-498-6320~6)에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News & News

초등생 전학년 구강검진 의무화 추진 이경숙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발의

현행 초등 1학년과 4학년만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초등학생 구강검진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 제7조 건강검사 실시에서 모든 초등학교 학생 중 1, 4학년에게만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 것을,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해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했다.

또 법안 발효시기는 개정안 통과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구강검진의 경우 학년에 상관없이 의무 검진화된다.

이 법안의 발의 배경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 2005년도 개정돼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학교보건법은 출장 집단검진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개정됐다”면서 “그러나 법안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구강질환은 학생시기에

가장 빈발하는 질환으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중요한 만큼 학생구강건강을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학교구강검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치협과 공동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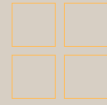
당시 공청회에서는 구강검진 의무 학년이 전 학년에서 1, 4학년만으로 축소됨에 따라 조기발견, 초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 수가 증가, 학생 구강건강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 의원실은 그 동안 구강검진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 해결책으로 초등학생 구강검진을 2006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구강검진 의무 학년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약 8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2, 3, 5, 6학년 재학생 수를 2백67만명으로 추산하고 검진비용을 1인당 310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검진비가 310원일 경우 전 학년 의무검진에 필요한 검진 예산은 3백98만명에 약 1백25억원이다.



치협,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거부 비대위 결성·의료인단체와 공동대책위 모색

치협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의 합의 추진을 거부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2월 3일 서울역 모 식당에서 안성모 협회장, 이수구, 김동기, 김재영 부회장, 김성욱 총무이사 등 치협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국 지부장협의회를 열고 각 지부 회장들의 의견을 수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국 지부 회장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와 치협 등 의료계간의 법안 합의 추진을 거부기로 했다.

또 ▲치협 내에 복지부 의료법개정안에 대처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의협, 한의협 등과의 공동 비상대책위 구성을 가능하다면 결성토록 요구했다.

아울러 ▲각 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신속하게 지부회원들에게 알리고 각 지부 별로 의료인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치협도 각 지부 회장들의 의견을 존중, 이 같은 방향으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치협의 이번 결정은 집단 휴진까지 추진하면서 전면 거부 투쟁

을 선언한 의협과 보조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강행하려는 복지부의 입장으로 볼 때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아울러 치협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의협에도 큰 영향을 미쳐 의료법 개정안 반대에 의료인단체가 한목소리를 내는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이날 긴급대책 회의에서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가 그 동안 복지부와 함께 논의해온 ▲의료법 개정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사항 ▲보건복지부의 최종안 ▲의료법 전면 개정의 주요내용 및 치협 의견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치협 회장단이 회의를 퇴장한 가운데 치협은 전국 지부 회장들에게 추후 대처 방향 등 지부차원의 공식의견을 요청, 지부 회장들은 숙고 끝에 47지 사항을 도출했다.

이날 지부장 협의회에서 전국지부회장들은 “복지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의료인을 옥죄는 개악”, “30~40년 후 후배들에게 옥먹을 법안”, “의료의 근간이 되는 법안인 만큼 철저히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복지부 개정안에 분통을 터트렸다.

치아교정·미용·성형수술 의료비 소득공제 받는다 정부안 최종 확정

치아교정 등 미용 및 성형 수술 관련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0일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지난달 발표한 세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된 이번 결정 중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각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 유도 및 세원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목적의 의료비 공제 확대 방안이 가장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민들이 각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미용, 성형수술 비용과 보약 값 등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확대 포함시켜 향후에는 사실상 모든 의료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지출한 각종 성형수술비와 보약 비용 등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미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한시적으로 2년간만 운영, 내년 11월까지의 지출 분에만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이번 의결에서는 현금영수증 관련 추후 소득공제 적용 방식도 확정됐다.

이는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급자,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증빙을 서면 혹은 인터넷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